보건복지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7. 20.(월) 위원회 종료(별도 안내) 이후 | 배포 2026. 7. 20.(월)

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위한 논의 이어가
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

-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관련 주요 쟁점 추가 검토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7월 20일(월)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**새로운 기준 중위소득*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**했다고 밝혔다.

*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

올해는 현행 산정방식의 적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**2027년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마련하는 해**이다. 이번 회의는 지난 제78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,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관련한 기존 쟁점을 논의하는 한편, **소득 통계의 급격한 변화와 시차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**하였다.

이날 회의에서는 **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**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산정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나, **추가 검토가 필요하다**고 보고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.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**후속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7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**이다.

정은경 장관은 "기준 중위소득은 많은 복지제도의 지원 수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**중요한 기준인 만큼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**하다" 라며, "논의된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여, **정해진 일정 안에 합리적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을 제시**하겠다" 라고 밝혔다.

<붙임> 1.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
2. 기준 중위소득 개요

담당 부서	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	책임자	과 장	박민정 (044-202-3050)
		담당자	서기관	이웅채 (044-202-306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**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**

□ 법적근거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

□ 구 성

○ 위원장 포함 16인의 위원으로 구성

- 당연직(6인): 보건복지부 장관(위원장) 및 국토교통부 · 교육부 · 기획예산처 · 행정안전부 · 고용노동부 차관
- 위촉직(10인): 전문가(5인), 공익을 대표하는 자(5인)

□ 위원회 기능 및 역할

○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 심의·의결

-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
-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
-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

구 분		성 명	현소속 및 직위
당연직		정 은 경	보건복지부장관(위원장)
		김 이 탁	국토교통부 제1차관
		최 은 옥	교육부 차관
		(공 석)	기획예산처 차관
		김 민 재	행정안전부 차관
		권 창 준	고용노동부 차관
위촉직	전문가	석 재 은	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
		김 태 완	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
		신 현 웅	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
		박 미 선	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
		김 성 식	서울교육대학교 부총장
	공익	송 인 규	법무법인 정원 대표 변호사
		김 도 형	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
		조 상 미	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
		김 수 완	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
		김 현 아	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

붙임 2 기준 중위소득 개요

□ **(개요)**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

※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6조의2(기준 중위소득의 결정)

① 기준 중위소득은 「통계법」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경상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)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,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.

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.

□ **現 산정방식('21년~'26년)**

○ **(원칙)**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

n년 기준 중위소득 = n-1년 기준 중위소득 x (1+기본증가율) x (1+추가증가율)

* 추가증가율은 6년간 ('21~'26) 한시 적용

○ **(기본증가율) 최근 3년(n-3~n-5년)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** 연평균 증가율

※ 다만, 차년도(n년)나 당년도(n-1년)에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증가율의 3년 평균치를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한다.

○ **(추가증가율) ①기준 중위소득-가금복 간 격차 해소, ②개편된 가구균등화 지수 반영을** 위해 **6년간('21~'26) 한시적**으로 **추가증가율 적용**

- **(통계원 변경) '21년**부터 **기준 중위소득** 및 **증가율을 산출**할 가구소득 자료를 통계청 **가계금융복지조사**로 개편('20.7월, 제60차 중생보 결정)

- **(격차 해소)** 통계원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간 **격차**('18 기준 12.49%) **단계적 해소**(6년간)

  * $(\text{n-3년 가금복 중위소득}/\text{n-3년 기준 중위소득})^{1/6}$

- **(가구균등화 지수) 1·2인 가구 보장을 강화**하는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

  *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지수 0.37 → 0.4 / 2인 가구 0.63 → 0.65 등

  ** 격차 해소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균등화 지수도 **6년간 단계적 변경**